

#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 안내

2021년 4월 26일(월) 시행

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에 따라 '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' 제도의 先시행을 위해 제출 서류 및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※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약처 공고 2021-121호, 2021.3.25.)

“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” 제도는 맞춤형화장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임시매장별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(신청대상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
- (신청기간) 1개월 이내(최대 1개월까지 신청가능)
- (제출자료)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(별지 제6호의2 서식), 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사본,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,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(팝업스토어 계약서, 임시매장 위치 사진·모식도 등)

☞ 본 안내문에 첨부된 신고서(작성요령 참고)와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·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\*하며,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임시매장 운영이 가능함

\*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 전까지 신청 수수료 없으며, 팩스/이메일 접수 불가함

\*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(nedrug.mfds.go.kr)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가능

## ※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락처

서울청 (의약품안전관리과)	전화 : 02-2640-1405, -1417	대구청 (의약품안전관리과)	전화 : 053-589-2753
부산청 (의료제품안전과)	전화 : 051-602-6184	광주청 (의료제품안전과)	전화 : 062-602-1541
경인청 (의료제품안전과)	전화 : 02-2110-8100	대전청 (의료제품안전과)	전화 : 042-480-8760